

	검수 규정	문서번호	3-1-21		
		제정일	2010. 03. 01.		
		개정일	2012. 11. 01.		
		페이지	1/2	관리 부서	사무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에서 구매하거나 기증 받은 물품 및 시설공사의 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검수”라 함은 물품이나 시설공사의 품의서, 계약서, 견적서, 납품명세서, 세금계산서, 공사관련 서류, 공사시방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를 대조·검사하여 그 기재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일을 말한다.

② “물품”이라 함은 현금, 유가증권, 및 부동산 이외의 것으로서 비품, 기계기구, 시설자재, 소모품, 약품, 인쇄물 등을 말한다.

③ “시설공사”라 함은 신·증축공사 및 개·보수공사를 직영 또는 도급하여 공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이 규정은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4조(검수권한과 책임) ① 검수는 사무처에서 행하되, 기술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따로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물품청구 부서는 필요한 경우, 검수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사전사용금지) 검수대상이 되는 물품은 검수를 받기 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검수하기 전에 사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검수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사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제6조(검수거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타당한 사유가 증빙되지 않는 한 검수하지 않으며, 검수자는 검수거부사유서를 작성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당해 부서로 통보하고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한다.

1. 물품구입품의서 내용과 상이한 경우
2. 계약서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
3. 납품명세서와 상이한 경우
4. 책정된 가격과 상이한 경우
5. 파손, 변질, 감손이 되어있는 경우
6. 기타 현저한 이상이 있는 경우

제7조(검수의 원칙) ① 검수담당자는 품질, 수량, 기타 납품조건에 합당한가를 검수하여야

	검수 규정	문서번호	3-1-21		
		제정일	2010. 03. 01.		
		개정일	2012. 11. 01.		
		페이지	2/2	관리 부서	사무처

한다.

② 입찰에 의한 물품이나 시설공사의 경우, 입찰관련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검수 시 품질에 대한 성분 또는 함량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시험 의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입고 및 관리) 구입물품 중에 비품에 속하는 물품은 비품등록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정의 절차를 밟은 후 관리하도록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교명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